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-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